

울산지방노동위원회

선연우, 박정훈, 김동윤



차 례

노동위원회 개요

노동위원회 조직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노동위원회 개요

< 노동위원회 성격 > 교재 p655

- ›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
- ›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

< 노동위원회 기능 >

- › 노동쟁의의 조정
- ›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등의 결정
- ›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
- ›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시정
- › 정책적 업무

노동위원회 조직

< 위원회 종류 > 교재 p656

- › 중앙노동위원회 (고용노동부 장관 소속)
- › 지방노동위원회 (고용노동부 장관 소속)
- › 특별노동위원회 (해당사항 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)

< 위원회 구성 > 교재 p657

- › 근로자위원·사용자 위원 10~50인, 공익위원 10~70인
- ›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으로 규정

노동위원회 조직

› 위원의 위촉 교재 p658

-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,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,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
-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·노동조합·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,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,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

노동위원회 조직

› 임 기 : 3년(연임가능) 교재 p659

› 위원장

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
› 상임위원

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조정 >

- › 노사간의 임금·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
- ›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
- › ※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중재 >

- ›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어느 일방이 신청하거나,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 권고에 의하여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 할 수 있음.
- › 중재재정은 당사자들의 수락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
- › ※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필수유지업무 결정 >

- › 필수공익사업장의 노·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 범위에서 그 유지수준, 대상 직무,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을 협정으로 체결해야 하며, 노·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
- › 노동위원회에서 사업(장)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·운영 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긴급조정 >

- ›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
- › 긴급조정결정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 금지
- › 이 기간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중재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복수노조 관련 업무 >

› 교섭창구 단일화

-하나의 사업(장)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 결정

› 교섭단위 분리

-하나의 사업(장)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위의 결정으로

-교섭단위 분리

› 공정대표 의무

-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> **교재 p599**

› 신청대상 : 부당해고, 부당한 휴직`정직`전직`감봉 기타 징벌

부당노동행위(불이익취급, 불공정한 고용계약,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,
노동조합 지배 개입)

› 신청기간 :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

› 판정 불복 시 재심신청 :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)

노동위원회 주요업무

<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>

- ›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(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자)가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통보
- ›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

노동위원회 업무

< 정책적 업무 >

- › 노동위원회규칙 제정권
- › 지시권
- › 근로조건 개선조치의 권고

감 사 합 니 다